

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10. 26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9일 허정행 의원 외 7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2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허정행 의원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발간하는 공공인쇄물과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, 광고제한 규정(안 제3조 및 제4조)
- 광고료 부과기준, 광고접수 및 계약(안 제5조 및 제6조)
-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, 광고원고의 제출(안 제7조 및 제8조)
- 준용(안 제9조)-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.
- 시행규칙(안 제9조)-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6.10.20.~10.24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,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 외 4개시, 광주시 북구 외 4개구, 그리고 서울시 서대문구가 조례를 제정·시행해 오고 있으며,
- 동(同)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, 사회공익성을 해치는 광고의 제한, 광고료 부과기준과 광고접수 및 계약절차, 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, 광고원고의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 안 제9조(준용)에서는 2015.1.15.부터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예에 따라 “그 밖에 광고료 부과·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을 따른다” 라고 규정하는 등 마포구에서 발간하는 인쇄물과 유선통신시설을 이용한 음성, 음향 및 영상물 등 광고가 가능한 공공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해서 광고료 부과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향후 마포구와 계약하는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대한 공정한 광고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그 밖에 조례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